

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3. 2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의 법령 변경,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농업·농촌 기본법」 →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(안 제2조)
- 기금출납원 개정 :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 → 농업정책과 주무담당
(안 제11조 제1항 제2호)
- 용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생략 근거 마련(안 제12조 제3항)
 - 당해연도 용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
- 용자대상사업 관련조항 변경 : 제4조제1항 → 제5조제1항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 - 862호(2009. 11. 24 ~ 2009. 12. 14)
 - 의견제출사항
- 관계법령 및 근거
 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 -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「농업·농촌 기본법」을 각각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하고, 제3호 중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“을 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수산업에서 생산되는“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”를 “농업정책과 주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용자대상자를 선정한다.”를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 단, 당해연도 용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4조중 “제4조제1항”을 “제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일몰제 적용)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"농·수산업"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과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"농·어업인"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3. "농·수산물"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11조(회계공무원)</p> <p>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농업기술센터소장</p> <p>2. 기금출납원 :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2조(읍·면·시장 대상자 선정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읍·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, 군수는 읍·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읍·면장대상자를 선정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"농어업" -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 ----- 제11호 ----- -----</p> <p>3. -----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수산업에서 생산되는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회계공무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기금출납원 : 농업정책과 주무담당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읍·면·시장 대상자 선정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 단, 당해연도 읍·면·시장 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 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음자 및 상환조건)제4조제1항에 규정된 음자대상사업에 대한 음자금의 지원 시기, 음자기간, 상환방법, 상환이율,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음자 및 상환조건) 제5조제1항--</p> <hr/> <hr/> <hr/>